

정 관

한일네트웍스 주식회사

정 관

제정 1998. 08. 26.

개정 2000. 04. 29.

2001. 11. 09.

2005. 03. 25.

2005. 11. 07.

2007. 03. 27.

2008. 03. 28.

2009. 03. 19.

2010. 03. 26.

2011. 03. 25.

2012. 12. 11.

2014. 03. 14.

2014. 12. 19.

2019. 03. 15.

2021. 03. 24

2023. 03. 27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한일네트웍스 주식회사”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HANIL NETWORKS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에 관한 사업
2. 정보화 구축사업
3. 별정통신 사업, 부가통신사업
4. 임대업 및 전대업
5. 네트워크 및 관련 시스템 매니지먼트사업
6. 인터넷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사업
7. 통신 및 컴퓨터 하드웨어 개발, 제조 및 판매 및 임대업과 관련
기술 용역업
8. 통신판매업
9. 정보시스템 컨설팅에 관한 사업
10. 정보처리 수탁관리에 관한 사업
11. 정보통신업무 제공에 관한 사업
12. 전기공사, 기계설비, 정보통신 공사 및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사업
13. 이동통신 시스템운영에 관한 사업
14. 유선방송 운영 및 프로그램 공급에 관한 사업
15. 교육훈련 서비스에 관한 사업
16. 사회교육시설 및 복지시설에 관한 사업
17.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에 관한 사업
18.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에 관한 사업
19. 국내외 무역 및 통관업
20. 광고 대행업 및 광고물 개발, 제작, 판매업
21. 인쇄 출판업 및 판매, 촉진사업
22. 센서부품 제조 및 자동제어 관련업
23. 사무자동화, 빌딩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업
24. 관광위락 및 요식업
25. 2차전지 판매사업
26. 항만운송사업, 항만시설 유지 관리업
27. 항공운송 주선업, 항공운송사업, 항공화물 운송대리점업,

상업서류송달업

28. 포장사업
29.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
자동차대여사업
30. 해상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주선업, 해운대리점업
31. 화물터미널사업, 복합운송 주선업
32. 주차장 운영업 등 운송관련 서비스업
33. 이사화물운송사업
34. 도매, 소매업(유통업)
35. 물류, 도매배송업
36. 위 각호에 관련한 부대사업 일체

제3조(본점의 소재지) ①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www.hanilnetworks.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 발행되는 일간 서울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5조(발행예정주식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

다.

제7조(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 이 회사는 설립 시에 10,000 주(설립 당시 1주의 금액 5,000원)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9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지며, 신주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전략적 제휴나 재무구조의 개선, 긴급한 자금의 조달 등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내국인 및 국내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발행하는 경우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2항의 1호 내지 6호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와 직계·준비속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④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무상

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의 액면분할 및 병합, 합병 등의 경우 행사가격 및 수량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1.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당해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

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14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5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변경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채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는 전환사채의 액면총액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총액과 합하여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의결권 우선주식 또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격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총액이 전환사채의 액면총액과 합하여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신주인수권부채를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및 개인,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의결권 우선주식 또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 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의 100분의 10의 비율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하여는 중간배당은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제20조(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0조의2(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

다.

제4장 주주총회

제22조(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3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정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 소집통지 대상은 1주 이상을 소유한 모든 주주로 한다. 단,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3년간 계속 도달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 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9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0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3조(주주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 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이사회·대표이사

제1절 이 사

제34조(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제35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
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6조의 2(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
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7조의 2(집행임원)**
-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 ② 집행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 ③ 집행임원의 수,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8조(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9조의2(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

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절 이사회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단,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3조(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3절 대 표 이 사

제44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45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장 감 사

제46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47조(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

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8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9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자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8조 제3항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자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0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제7장 회 계

제52조(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5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대표이사는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6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56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3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56조의2(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 주식 또는 그 외의 재산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지급은 이사회 결의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법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의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제1항의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7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1998. 8. 26.)

본 정관은 1998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 29.)

본 정관은 200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9.)

본 정관은 2001년 11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25.)

본 정관은 200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1. 7.)

본 정관은 2005년 11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29.)

본 정관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28.)

본 정관은 200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19.)

본 정관은 200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 26.)

본 정관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개정내용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25.)

본 정관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16.)

본 정관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 제14조, 제21조의2, 제40조의2, 제42조, 제50조, 제54조 및 제57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11.)

본 정관은 201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14.)

본 정관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19.)

본 정관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15.)

본 정관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 제15조, 제18조의2 및 제21조 개정내용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24.)

본 정관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3. 27.)

본 정관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